

의정활동보고서

제203회 정례회(2005. 11. 21 ~ 12. 23)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제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300만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제관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지진·해일과 테러 등 나라 안팎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어려운 주변상황도 많았습니다만. 지난달 우리도가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에 입상한 것은 도민의 자긍심을 되찾아 주었으며,

이는 선수와 체육인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선전한 값진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지방정체를 말살하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하여 도민 모두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는 사실상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정을 미리 총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역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개선·보완되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 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도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경기부양에 맥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이 낭비됨이 없이 알뜰한 도정 살림살이가 꾸려질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노력하는 가운데 지혜를 모아 도민들의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의정모습을 보여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뜻하시는 소망이 내년도에는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차 례

I. 개 황

II. 의사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상임위원회

III.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상임위원회

IV. 민원 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2. 조례 공포사항

3. 위원회 활동사항

VI. 기타사항

VII. 5분 자유발언

VIII. 도정질문

부 록

□ 조례안

1.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의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7.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안

1. 2006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동의안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 2006년도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3. 2006년도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06년도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5. 2006년도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06년도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06년도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06년도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06년도 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0. 2006년도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방채 발행안
11. 2006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2006년도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3. 2006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2006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5. 2006년도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06년도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7. 2006년도 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8. 2006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결의안

1.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철회촉구 결의안

□ 기타안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03회 정례회는 2005년 11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12월 23일까지 33일간의 회기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29회 상임 및 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1월 21일(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정보호·김석호의원)을 청취한 후, 제20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 200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12월 2일(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임원식·김기홍·이상태·김선종의원)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12월 16일(금)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장대진·우성호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외 17건의 동의안,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0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12월 23일(금)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Ⅱ. 의사일정

1. 소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5-18호(2005년11월11일,금)

라. 집회일시 : 2005년 11월 21일(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5년 11월 21일 ~ 12월 23일 (33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4회 (누계 88회)

○ 상임위 회의 : 29회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11. 21(월) 11:00 (제1차)	1. 5분 자유발언 · 정보호의원 (구미시, 교육환경) · 김석호의원 (구미시, 행정사회) 2. 제20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11. 21(월) 11:00 (제1차)	3.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0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수도권 공장규제완화 철회촉구 결의안 6.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원안가결
2005. 12. 2(금) 11:00 (제2차)	1. 도정질문 · 임원식의원 (울진군, 경제문화) · 김기홍의원 (영덕군, 기획과학) · 이상태의원 (울릉군, 행정사회) · 김선중의원 (안동시, 교육환경)	
2005. 12. 16(금) 11:00 (제3차)	1. 5분 자유발언 · 장대진의원 (안동시, 행정사회) · 우성호의원 (영주시, 경제문화) 2.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의사용및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12. 16(금) 11:00 (제3차)	8. 경상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원안가결
	10. 2006년도 경상북도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1. 2006년도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2. 2006년도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3. 2006년도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4. 2006년도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5. 2006년도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6. 2006년도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7. 2006년도 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8. 2006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방채 발행안	원안가결
	19. 2006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0. 2006년도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1. 2006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원안가결
	22. 2006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 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3. 2006년도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원안가결
	24. 2006년도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5. 2006년도 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원안가결
	26. 2006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7.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8. 200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5. 12. 16(금) 11:00 (제3차)	29.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0.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5. 12. 23(금) 11:00 (제4차)	1.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나.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2. 1(목) 11:00	○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2005. 12. 6(금) 10:00(제1차)	○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 12. 19(월) 10:30(제2차)	○ 제204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원안가결 원안가결

〈기획과학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11. 22(화) ~ 12. 1(목)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포항의료원(11.22), 김천의료원(11.23), 안동의료원(11.24), 경북개발공사(11.25), 공무원교육원(11.28), 기획관리실·공보관실(11.29), 과학정보산업국·감사관실(11.30)	
2005. 12. 5(월) 11:00(제1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5. 12. 6(화) 11:00(제2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과학정보산업국, 공무원교육원	원안가결
2005. 12. 19(월) 11:00(제3차)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행정사회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11. 22(화) ~ 12. 1(목)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국(11.22~23), 보건복지여성국(11.24~25), 경도대학(11.28), 자연환경연수원(11.29)	
2005. 12. 5(월) 11:00 (제1차)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사회복지, 재해구호,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원안가결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2. 5(월) 11:00 (제1차)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의결유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 12. 6(화) 11:00 (제2차)	○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의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5. 12. 7(수) 11:00 (제3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경도대학, 보건복지여성국	수정가결
2005. 12. 19(월) 11:00 (제4차)	○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5. 12. 20(화) 11:00 (제5차)	○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도대학, 보건복지여성국	수정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5. 11. 22(화) ~ 12. 1(목)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산림수산국(11.22~23), 보건환경연구원(11.22~23),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11.25, 11.28) ○ 지역별 「학교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 김천·구미·상주교육청(11.29) · 안동·문경·의성·예천교육청(11.30) · 경주·영천·경산·청도교육청(12. 1)	
2005. 12. 5(월) 11:00 (제1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환경산림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 2006년도 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5. 12. 6(화) 11:00 (제2차)	○ 2006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방채 발행안 ○ 200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교육청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 12. 19(월) 11:00 (제3차)	○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환경산림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 12. 20(화) 11:00	○ 상주지역 학교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농정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11. 22(화) ~ 12. 1(목)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생물자원연구소 · 풍기인삼시험장(11.23), 영양고추시험장(11.24), 농업기술원 · 가축위생시험소(11.28), 농정국(11.29)	
2005. 12. 5(월) 11:00 (제1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 농정국 ○ 2006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5. 12. 6(화) 11:00 (제2차)	○ 2006년도 경상북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 12. 19(월) 11:00 (제3차)	○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농정국, 농업기술원 ○ 쌀값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원안가결 원안가결

〈경제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5. 11. 22(화) ~ 12. 1(목)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실(11.22), 문화체육관광국(11.23) 경북통상 · 경상북도체육회(11.24), 경상북도 운수연수원(11.25), 한국국학진흥원(11.28)	
2005. 12. 5(월) 11:00 (제1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 경제통상실 ○ 2006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2006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2. 6(화) 11:00 (제2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 2006년도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 2006년도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 2006년도 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 12. 19(월) 14:00 (제3차)	○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1. 22(화) ~ 12. 1(목)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경소방서(11.22), 소방학교(11.23), 영천소방서(11.24), 종합건설사업소(11.25), 소방본부(11.28), 건설도시재난국(11.29)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 포리~벌방간 도로 확포장공사(11.22) · 수하~왕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11.23) · 북안~고경간 도로 확포장공사(11.24) · 우곡교 건설공사(11.25)	
2005. 12. 5(월) 11:00 (제1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재난국 ○ 2006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수정가결 원안가결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2. 6(화) 14:00 (제2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 12. 19(월) 11:00 (제3차)	○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재난국, 소방본부	수정가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1. 21.(월) 09:40 (제1차)	○ 수도권 공장규제완화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2. 8.(목) 10:30~18:00 (제4차)	○ 200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 교육청	
2005. 12. 9.(금) 10:30~18:00 (제5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 공보관실, 감사관실, 과학정보산업국,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2005. 12. 12.(월) 10:30~18:00 (제6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 보건복지여성국, 환경산림수산국, 소방본부, 경도대학, 농정국	
2005. 12. 13.(화) 10:30~18:00 (제7차)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보건 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건설도시재난국,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5. 12. 13.(화) 10:30~18:00 (제7차)	○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선임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5. 12. 14.(수) 10:30~18:00 (제8차)	○ 200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 2006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 200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채택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5. 12. 21.(수) 10:30~18:00 (제9차)	○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선임의 건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38 (379)	35 (372)	33 (329)	2 (41)	(2)	(2)	3 (5)	
조 례 안	소 계	12 (178)	10 (174)	9 (151)	1 (22)	(1)		2 (4)	
	의 회 제 안	1 (19)	1 (19)	1 (8)	(10)	(1)			
	도지사 제 출	9 (129)	9 (127)	8 (117)	1 (10)			(2)	
	교육감 제 출	2 (30)	(28)	(26)	(2)			2 (2)	
예산 · 결산		4 (34)	4 (33)	3 (18)	1 (15)		(1)		
동의 · 승인		18 (101)	18 (101)	18 (100)	(1)				
건 의 안		1 (13)	(12)	(11)	(1)			1 (1)	
결 의 안		1 (16)	1 (16)	1 (15)	(1)				
기 타 안		2 (37)	2 (36)	2 (34)	(1)	(1)	(1)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부결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승학의원외 14인 발의, 2003. 9. 2, 본회의)
- ②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정기의원외 16인 발의, 2004. 9. 1, 의회운영위원회)

〈철회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철회안
(김정기의원외 32인 발의, 2004. 7. 2, 본회의)
- ②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박영화의원외 20인 발의, 2005. 6. 9, 본회의)

〈계류 중인 안건 현황 : 7건〉

- ① 경상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2. 10. 15, 행정사회위원회)
- ②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3. 9. 8, 기획위원회)
- ③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④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⑤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005. 11. 30, 미상정)
- ⑥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005. 11. 30, 미상정)
- ⑦ 쌀값 하락 관련 대책 촉구 건의안
(정상진의원외 16인 제출, 2005. 12. 16, 미상정)

2. 상임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 회	계 류
		가 결							부 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38 (381)	38 (373)	12 (176)	4 (33)	18 (101)	1 (13)	1 (16)	2 (34)	(2)	(2)	(4)
의 회 운 영	(16)	(15)	(7)				(5)	(3)	(1)		
기 획 과 학	1 (29)	1 (28)	1 (17)		(7)	(2)	(1)	(1)			(1)
행 정 사 회	17 (108)	17 (107)	9 (72)		8 (32)	(1)	(2)				(1)
교 육 환 경	4 (52)	4 (52)	2 (37)		2 (13)	(1)		(1)			
농 정	3 (23)	3 (23)	(7)		2 (13)	1 (3)					
경 제 문 화	5 (51)	5 (51)	(20)		5 (27)	(2)	(2)				
건 설 소 방	1 (23)	1 (23)	(12)		1 (8)	(2)		(1)			
특 별	5 (35)	5 (35)		4 (33)			1 (1)	(1)			
본회의	2 (44)	2 (39)	(4)		(1)	(2)	(5)	2 (27)	(1)	(2)	(2)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9 (147)	(15)	6 (23)	(12)	1 (33)	(9)	(9)	(14)	(12)	2 (20)
의 회 운 영										
기 획 과 학	(14)		(1)		(9)		(2)			(2)
행 정 사 회	6 (28)	(10)	4 (8)	(1)	(2)					2 (7)
교 육 환 경	(26)			(1)		(9)		(13)	(2)	(1)
농 정	(9)			(1)	(1)				(7)	
경 제 문 화	1 (31)	(2)	1 (13)	(4)			(7)			(5)
건 설 소 방	2 (36)	(3)	1 (1)	(5)	1 (21)			(1)	(3)	(2)
특 별 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9 (145)	9 (145)				2 (2)
의회운영						
기획과학	(14)	(14)				
행정사회	6 (28)	6 (28)				
교육환경	(26)	(26)				
농 정	(9)	(9)				
경제문화	1 (29)	1 (29)				(2)
건설소방	2 (36)	2 (36)				
특별위원회	(3)	(3)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김정기의원외 21인 (2005. 11. 4)	경상북도 학교급식 식재료의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교육감 (2005. 11. 7)	200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교육환경 (2005. 11. 7)
경상북도교육감 (2005. 11. 7)	2006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방채 발행안	교육환경 (2005. 11. 7)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상임위 (2005. 11. 10)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경상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과학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5. 11. 11)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행정사회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교육환경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농 정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농 정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경제문화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경제문화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경제문화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경제문화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경제문화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건설소방 (2005. 11. 11)
경상북도지사 (2005. 11. 10)	2006년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보고	본회의 (2005. 11. 14)
경상북도지사 (2005. 11. 14)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사회 (2005. 11. 16)
경상북도지사 (2005. 11. 1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사회 (2005. 11. 16)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5. 10. 27	경상북도 지 사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05. 11. 17
2005. 10. 27	“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5. 11. 17
2005. 10. 27	“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2005. 11. 17
2005. 10. 27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	2005. 11. 17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소	활동내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5. 11. 2(수) ~ 11. 4(금)	포항, 김천, 경주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김천실내수영장 건립, 경북도수목원 등)
지역균형 발전특별 위원회	2005. 11. 11(금) ~ 11. 12(토)	기획과학 위원회 회의실	· 지역균형발전관련 업무보고 · 대구경북테크노파크 현지 확인
전국체육대회 지원특별 위원회	2005.10.27(목)	김천종합 경기장	· 전국체전기확단 업무보고 · 제87회 전국체전개최지 시설확인 및 점검

VI. 기타사항

○ 바르게살기운동 제7회 국민화합 전진대회

- 일 시 : 2005. 10. 28(금) 14:00
- 장 소 : 전북고창 실내체육관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축사)

○ 동아일보 2005 경주오픈 마라톤대회

- 일 시 : 2005. 10. 30(일) 08:00
- 장 소 : 경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식

- 일 시 : 2005. 10. 31(월) 14: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축사)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5. 10. 31(월) 15:00
- 장 소 : 전라남도의회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 하이브리드 부품 기술혁신센터 협약식

- 일 시 : 2005. 11. 2(수) 11:00
- 장 소 : 영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양재경 의원

○ 제7회 경상북도 학생축제 개막식

- 일 시 : 2005. 11. 3(목) 14: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장미향 교육환경위원회 간사,
권준택 의원, 이우경 의원

○ 도농상생 교류 촉진대회

- 일 시 : 2005. 11. 4(금) 14: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 이용석 농정위원장

○ 제42회 경상북도 학생체육대회

- 일 시 : 2005. 11. 4(금) 11:00
- 장 소 : 안동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장미향 교육환경
위원회간사, 권준택 의원, 김선종 의원, 박종욱 의원

○ 2005 경북리그 본선대회 개회식

- 일 시 : 2005. 11. 5(토) 11:00
- 장 소 : 경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유럽지역 해외 방문(자매결연 조인식)

- 일 시 : 2005. 11. 6(일) ~ 11. 10(목)
- 장 소 : 스페인 가스띠야 레온주
- 참 석 : 이철우 의장

○ 경북부패방지협의회 참석

- 일 시 : 2005. 11. 6(수) 10:3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양재경 의원

○ 제14회 새마을한마음합창경연대회

- 일 시 : 2005. 11. 10(목) 13:00
- 장 소 : 성주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한혜련 경제문화위원회간사(축사)

○ 시민화합 한마음 대축제

- 일 시 : 2005. 11. 14(월) 16:30
- 장 소 : 경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현대중공업 포항공장 준공식

- 일 시 : 2005. 11. 14(월) 11:00
- 장 소 : 포항시 흥해읍소재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축사)

○ 경주서라벌 광장 준공식

- 일 시 : 2005. 11. 15(화) 11:00
- 장 소 : 경주서라벌 광장
- 참 석 : 양재경 의원(축사)

○ 2005경상북도 여성지도자 워크숍

- 일 시 : 2005. 11. 15(화) 14:00
- 장 소 : 경주 코오롱호텔
- 참 석 : 한혜련 경제문화위원회간사(축사)

○ 2005경북 취업·창업 박람회

- 일 시 : 2005. 11. 16(수) 11: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손규삼 부의장

○ 동서지역 노사한마음 갖기 대회

- 일 시 : 2005. 11. 17(목) 08:00
- 장 소 : 광주 백양사국립공원
- 참 석 : 이철우 의장(축사)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5. 11. 18(금) 12:00
- 장 소 : 서울시 의회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10회 농업인의 날 행사

- 일 시 : 2005. 11. 18(금) 10:00
- 장 소 :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축사), 이용석 농정위원장, 김주연 의원
방대선 의원, 손만덕 의원

○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대구경북시도민 규탄대회

- 일 시 : 2005. 11. 18(금) 14:00
- 장 소 : 구미 공단운동장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규탄사),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이용석 농정
위원장, 박승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병진 기획과학위원회 간사,
정상진 농정위원회 간사, 김석호 의원, 권준택 의원, 김주연 의원,
손만덕 의원, 이상호 의원

○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대회 『2005경북리그』 시상식

- 일 시 : 2005. 11. 19(토) 15: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Ⅶ. 5분 자유발언

□ 2005년 11월 21일(월) 제203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정보호 의원 ◎

정보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백만 도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도지사님, 그리고 내일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감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방폐장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지사님, 그리고 여러분께도 애쓰셨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똥판지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지 않을 없습니다. 지난 11월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내 대기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에서 LCD 모니터, LCD TV, 전기변환장치, 유사반도체 등 대기기업의 8개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 신설이 가능해지고 증설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청천벽력 같고도 어처구니없는 정부방침에 본의원은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인지, 아니면 한낱 수도권 주민만을 위한 정부인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으며 어떻게 이렇게 코흘리개만도 못한 원칙과 소신이 없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을 소리높여 외치면서 뒤에 와서는 하루아침에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려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과 같은 안면후치한 움직임에 전 3백만 도민들은 절대 좌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94년 김영삼정부 당시부터 수도권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실시된 대기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불허방침이 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에 이어 이번에 국내 대기기업의 공장 신·증설마저 허용한 것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현정부와 여당이 지방의 심각한 경제적 빈곤상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경제 침체 과속화라는 양극화가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원칙과 소신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지 그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겨우 목숨만 붙어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생존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만의 정략적인 의도가 의심될 만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초를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일방적으로 수도권 공장 설립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가뜰이나 경제적 고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경제를 그대로 말려죽이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과연 현재의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참여정부가 맞는지, 그리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고도 한편으로 치밀어오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라는 대통령 취임연설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임연설이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 국민을 상대로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세계 각료들이 보는 앞에서 대국민 서약일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은 정파나 정권차원이 아니라 지방은 물론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도 그냥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서로 다른 두 말씀, 일구이언, 일구이언이면... 제발 일구이언이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수도권 공장 설립규제 완화방침을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일 이번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완화방침을 저지해내지 못한다면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결국 우리 경북을 비롯한 모든 지방의 경제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사님, 다행히 우리 지사님께서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지사님 중 비수도권 13개 광역단체장님들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호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사님, 의장님, 지금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북이 가면 한국의 길이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일은 너와 나의 개인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니, 비수도권지방 전체의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연대하여 수도권 공장 설립규제 완화방침을 분쇄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투쟁을 포함한 것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전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구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는 거짓말이 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뜻을, 마음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석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앞서 발언하신 정보호의원님과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사실은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세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5분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출신 김석호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북과 구미의 몰락을 획책하는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라는 망국정책의 실상을 비장한 결사의 각오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일 자랑스러운 30만 경주시민 여러분께서는 목숨 건 결단으로 방폐장을 유치, 경북 웅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현대중공업 포항공장 준공으로 포항 경제는 다시 살아 꿈틀거리며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의 개원으로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방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대한 300만 도민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호기를 맞아 죽기 살기로 지역경제 발전과 경북의 도약을 위해 땀을 쏟아 붓고 있는 지난 11월4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구미와 경북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균형발전을 부르짖던 정부와 여당이 지난 10년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손대지 않던 수도권내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이라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합의하였습니다. 8개 첨단업종의 면면과 예상 피해는 미리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다시피 구미는 300억불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아가고 있으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불철주야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조성중인 국가 4단지 9개 첨단 외국기업으로부터 10억9,000만 달러의 투자유치를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300억불을 수출하는 효자도시 구미를 죽이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나선 것입니다. 수도권내 대기업의 8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진행되면 구미는 LG의 직접투자액 1조4,000억원이 날아가고 일자리 5,700개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LG전자, LG이노텍, LG마이크론과 1, 2차 관련 49개 하청업체가 구미를 떠날 것입니다.

LG가 떠나면 삼성이 떠날 것이고 이는 구미를 중심으로 축적된 김천, 칠곡, 성주, 고령, 대구, 경산, 영천, 포항을 잇는 IT벨트는 붕괴되고 경북·대구 지역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미 4공단에 투자를 하겠다고 접촉해오던 외국 4개 기업이 부정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분양은 투자문의전화가 끊겼습니다. 투자를 계획했던 국내 모기업은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공단의 휴대폰 금형사출 기업은 주문량이 크게 줄었고 파주 등 경기지역에 구미 내 6개사가 1만6,000평, 대구의 모화학이 3,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종업원과 생산라인의 이전계획 추진 중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이전의 자금력이 부족한 2차, 3차 협력 업체는 줄도산의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며 공단과 근로자를 배경삼아 영업하던 식당, 운송 등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할 것입니다.

김천지역 중소기업의 40%인 100여사 구미공단 협력업체 역시 이전 혹은 폐업이 예상되어져 김천 경제 역시 동반몰락 할 것입니다. 대구, 칠곡, 군위에서 구미로 출근하던 수만명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어집니다.

의욕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포항신항만 역시 물동량이 크게 줄어들어 규모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조성중인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의 국내 대기업 유치 또한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특히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과 포항나노집적센터는 존립의 근거가 사라지는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구미공단의 각 기업체가 소비하고 10만 근로자와 38만 가족들이 소비하던 의성마늘, 영양 고추, 영천포도, 울진 영덕대게 등 우리 경북의 농수산물 판로가 막히고 관광레저에 대한 수요가 격감 경주, 청송의 관광산업 침체가 우려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쌀소비는 철원평야의 쌀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방의 공동 현상일 것입니다. 구미, 아니 경북이 생존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구미시민만의 것이 아니라 경북도민 전체의 것입니다. 경북 도민여러분들의 자식과 형제가 구미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38만 시민 중 5만을 제외한 나머지 33만은 팔도향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붕괴는 경북과 대구경제의 동반 몰락을 뜻합니다. 금번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를 막아내지 못하면 경북의 웅비와 300만 경북도민의 번영은 없다고 본의원은 감히 단언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인구의 48.3%가 모여 사는 수도권의 과밀과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한 규제인 수도권규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거스르는 망국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구미의 붕괴가 곧 경북의 몰락임을 통찰하시어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기필코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막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본의원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호소에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18일 구미에서 열린 “수도권규제완화 범 시도민 규탄대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5년 12월 16일(금) 제203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장대진 의원 ◎

안동출신 장대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를 보고 대구·경북은 있되 과연 북부지역은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북부지역은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56.7%를 차지할 정도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보다도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건설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균형발전에 목적이 있는 바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당연히 경북 북부에 혁신도시가 와야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중심축으로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배점내용을 살펴보면 접근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는 서울과 얼마나 더 가까우냐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좌우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공기관을 서울에 두어야지 왜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입지선정 결과를 12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모조간신문은 혁신도시결정사실을 당일 아침신문에 1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혁신도시 신청을 낸 나머지 19개 시·군을 철저히 가지고 놀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북 북부는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도청이전 1순위 후보만 정해 놓고 10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 무산, 북부지역은 항상 정책의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혁신도시입지선정발표 시에 배포한 자료에 보면 혁신도시 이외 지역은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고 북부지역에는 한방, 농업, 해양 분야의 일명 BT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그렇다고 북부지역 육성책이 여태껏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흘러간 유행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해 북부지역 민심을 달래려 한다면 이는 참으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북부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부러 약 올리기 위해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경북은 있되 북부지역은 없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는 근본적으로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에 있어서 대구·경북의 논리에는 아예 북부지역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구·경북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상북도는 대구중심의 고삐에 묶인 소처럼 대구가 가자

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도청이 대구에 있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이번 혁신도시 발표로 인해 지역민심은 불씨만 닿으면 폭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또 다시 경부 축으로 결정되면서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의 중요한 시점을 놓쳐 버린 현 시점에서 경상북도가 구미축, 포항축과 함께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것은 도청이전 밖에는 다른 어떤 대안도 없는 것입니다.

새로 지어서 이사한 전라남도 도청을 볼 때 본위원은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뿐 입니까? 현재 경북과 함께 도청이전을 하지 못한 충청남도도 내년 1월까지의 도청입지선정을 완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경북 북부를 살리고 경상북도가 대구중심논리의 시너에서 벗어나 자주경북을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도청이전계획을 추진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성호 의원 ◎

영주시 출신 우성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철도문제, 공공기관 배치문제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철도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혁신도시입지가 선정 발표되기 직전인 12월12일 본의원 출신지역인 영주시민들은 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 분리추진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입수한 한국철도공사조직개편안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기존의 영주지역본부를 경북 영주, 충북 제천, 강원 동해 등 3개 지사로 내년 상반기 중 분리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한 나머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이 문제를 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 집행부의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대정부대응책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도정 질문을 신청하고 지난 11월31일 이와 관련한 도정 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 집행부는 철도문제에 관한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고 아예 담당공무원도 없었습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준비도 실·국간에 서로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미룰 정도였습니다. 이에 앞서 철도시설건설을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미 작년 1월 출범 당시 원주에 강원지역본부, 부산에 영남지역본부를 배치해서 영주지역본부에 있던 철도시설 건설업무를 박탈해서 원주로 옮겨 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16일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도 집행부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주지역본부 설치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나 도 집행부는 여태까지 아무런 가시적 조치를 취한 바 없습니다.

철도는 공공성을 지닌 국가기간산업이고 또한 대표적인 장치산업입니다. 수익성만을 잣대로 조직을 개편할 수 없으며, 시설투자 없이 여타 교통수단과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중앙선 통과지역은 산악지형인 특성상 곡선전철화사업이 완료된다면 철도교통이 도로교통보다 얼마든지 비교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특히 영주에 있어서는 철도문제는 사활적 사안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역의 사활적 사안인 철도문제와 관련해서 도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철도공사의 영주지역본부 해체분리 기도를 원천 봉쇄하는데 즉각 앞장설 것, 둘째, 한국철도시설공단 영주지역본부 설치를 강력히 추진 할 것, 셋째, 중앙선 곡선전철화사업 완결을 철도조직개편의 선결조건으로 관철할 것이 그 세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배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3일 우리 도의 혁신도시입지가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혁신도시입지로 선정된 김천시민께 무한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탈락 지역에 대한 적절한 후속대책이 조속히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홍 철 위원장이 밝힌 일부 이전기관의 분산배치방안은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참으로 주목할 만한 견해라 하겠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이번 일로 상실감과 소외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 집행부가 오랫동안 경상북도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해 온 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가적 사업이든 도의 시책사업이든 거의 모든 주요사업이 경북도내 남부 인구밀집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도내 4대 도시인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위주의 발전전략이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도 경주가 방패장을 유지한데 이어 혁신도시로는 김천이, 도립문화재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천으로, 도립근로자복지연수원은 청도에 그리고 도 농업기술원은 군위로 각각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예정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그나마 안동시에 각종 도립기관이 다소 배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주요시책사업추진과 주요기관 배치에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도 집행부는 언제까지 경북 북부지역을 방치하고 소외시킬 것입니까?

그동안 도 집행부는 영주시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냉담했고 비협조적이었으며 또한 무관심 했습니다. 한방단지입지선정에서부터 도립의료원설립, 축구센터유치, 인삼랜드 건설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철도문제가 터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 출신지역인 영주는 이번 철도문제로 파탄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주 시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 그리고 위기감을 완화시키려면 공공기관 배치와 관련한 적절한 결과와 조치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를 집행부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면 축산기술연구소가 소재하는 영주지역의 특성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영주배치가 바람직하고...

둘째, 도 산하기관 중에서는 역시 축산기술연구소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가축위생시험소의 영주배치가 필요하며 셋째, 영주지역 도립의료원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서 후속대책을 조속히 취할 것이 그 세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III. 도정질문

□ 2005년 12월 2일(금)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任元植議員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울진군 출신 임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03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승회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 도민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격려를 보냅니다.

어언 민선3기 이의근 지사의 임기도 이제 6개월여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끝마무리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10여년간 경상북도를 경영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도정을 무난하게 잘 이끌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을 잘 마무리해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어 존경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치란,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걱정없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큰 공장 다 떠나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됩니까?

쌀 비준안 통과로 쌀 시장은 개방되고 농민은 자살하고 농어촌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서민들은 살아갈 걱정이 태산인데 하루 밤만 자고나면 정부의 하는 일마다 열 받는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실성이 없는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방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물러설 때도 없습니다.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도민들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힘을 합쳐 새롭게 출발했을 때 반드시 경북의 발전과 잘 살 수 있는 희망의 길은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럼 먼저 엑스포 건축물, 또 금이 간 도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전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정 전반에 구멍이 뚫렸고 조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로 줄줄이 사퇴하여 잦은 인사로 인한 조직의 공백과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공직기강의 해이로 인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능장 인사로 인한 공백이 생겼으며, 간부직 인사를 미루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을 보면 낭비성 요소가 많은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예산이 작년 대비 각각 12.3%, 16.3%가 인상, 증액 편성되었고 경주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 건립 사업도 2004년12월29일 300억 사업으로 2007년까지 완공하도록 착공하였으나 갑자기 140억을 증액, 440억의 건축물사업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12월29일 착공한 사업이 애당초 300억이 아닌 630억 건축물로 설계 착공했다는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사업예산도 지방중기재정계획서까지 매년 고쳐가면서까지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행 추진과정에서 계획을 마음대로 불법 변경, 불법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회계법을 위반하는 온갖 불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추가설계변경 용역예산 4억을 승인없이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스스로없이 하는 이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위임을 인정한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이번 기회에 상징건축물 건립사업을 포함한 문화엑스포 사업 전반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가 몇 사람들의 개인소유물입니까? 얼마나 도민을 우습게 알고 또한 도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의근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각설이가 대목장에 실수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장날에는 공연도 잘되고 박수도 많이 받고 실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설이나 추석에 꼭 대목장에 사람 많이 모일 때 실수한다는 말입니다.

지사께서 남은 6개월여 동안 도정전반에 관한 각종 시책사업들을 진단, 점검하여 실수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계속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큰 공장 다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 11월10일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령 입법예고를 8일간 공공하여 통상 20일 이상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18일 허둥지둥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경북이 먹고 살 신성장 동력 산업정책을 말살하고 지방경제를 몰락시켜 도민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 등 지역 균형개발정책을 하루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정치적 논리와 계산방식으로 결국 도민들은 죽으라고 하는 이런 정부가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정부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3백만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강력한 저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촛불이 아닌 햇불을 들고 도민들이 총궐기해야 됩니다. 이의근 지사께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 정부가 혁신을 통한 작은 정부를 주창하였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직은 비대해졌고 중앙정부 공무원은 증가하였고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반경 40km 이내에 국가 중추기능이 95%나 집중되고 인구 47%, 4년제대학 41%, 100대기업 본사 99개, 미술관 60%, 영화관 53% 등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등등 사람과 돈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무슨 분권이고 지역균형발전이란 말입니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방이 살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완화는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세제개편을 통한 완전한 독립된 자치정부 수립만이 해결방안이며, 이미 본의원이 2004년12월2일 도정질문시 주장한 바,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의근 지사께서도 어느 특강에서 “중앙언론, 정당, 행정중앙집권이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과 철학을 좀 일찍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의근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동화 되어가는 농촌 어떻게 할 것인가, 농어촌의 발전없이 선진국이 될 수도, 2만불 시대도 열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23일 쌀 수입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0년간 관세유예로 완전 개방되었습니다. 성주의 여성농민 한 분이 자살하였습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미리 예견되고 10년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중앙정부와 지시에만 의존하는 경북의 농정정책을 질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업구조를 벼농사에서 대체작물로, 고소득 특화작물로 바꾸어야 한다고 도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정책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귀를 막았습니다. 대부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아직도 검토 중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국경이 없는 새로운 시대, 여러분이 앞장서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비록 추진했던 일이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개척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프리카 재배와 관련하여 벼농사의 대체 고소득 작물이며 경쟁력 있는 품종이라며 정책추진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재배기술이 어렵고 투자비가 많이 들고 어려운 사업이다, 검토해 보겠다, 청송에만 일부 재배하고 있다”라고 상투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웃 경상남도에서는 파프리카 재배하는 15농가가 3만평 경작지에서 평당 5~7만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신지식 벤처농업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시설비는 국비 3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30%로서 70%를 지원받아 해결했습니다. 판로도 걱정없이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중주국 네덜란드보다도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경북도에서도 300m 이상 고지대 벼농사를 지양하고 고랭지 특화작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안정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해야

하며 지역적으로 기후조건이 맞는 고소득 대체작물을 개발하여 집중과 선택으로 경북농업을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관세 10년 유예, 길지 않습니다.

지금 농어촌은 고령화와 함께 삶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공동화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어촌을 이대로 방치하면 공동체 삶의 문화가 파괴되어 인재에 의한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경상북도는 농어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제언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번국도 4차선 소천~울진간 조기 착공 준공되어야 합니다. 36번국도 영주~울진 구간 74.9km중 영주~봉화 구간은 금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봉화~소천구간은 2009년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천~서면~울진 구간 39.4km는 2002년부터 4년간 건교부, 환경부, 경상북도 울진군, 환경단체와의 40여 차례 협의, 간담회, 건의,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보존정책에 따라 친환경 도로건설을 하도록 건교부에 요구하였으나 건교부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므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착공도 하지 못하고 결국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의 최대수혜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친환경적 도로건설을 즉각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 1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 5차 협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협의 완료하여 소천~울진구간이 하루빨리 착공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 조기 착공되도록 촉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승회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승회교육감께 장애인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생명입니다.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소외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장애인교육권연대와 7개 합의사항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의 고등학교 14개 시군의 특수학급 설치시기와 특수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을 언제

할 것인지, 특수교육 예산확보와 2007년도 특수학교 설치계획과 약속한 사항들의 추진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에 관하여 어느 관정보다도 교육행정의 현장에서 장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도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대구시, 경북도, 대구시 교육청의 의무 고용율은 상회하고 있는데 경북교육청만이 유독이 1.75%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감께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많은 장애인들을 채용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징계 관련입니다.

교육청 본청 및 소속 교육청의 2004년, 2005년 징계관련자는 14명이며, 모두 금품수수 및 뇌물수수로 인한 행위이며, 사건명으로 봐서는 엄중히 처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경징계로 처분하였습니다.

우리들 식구라고 해서 유독 봐주기 처분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솜방망이식 처벌을 해서야 교육청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의 현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경징계로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경주문화엑스포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사님이 검직하고 계십니까? 사무총장은 나왔습니까?

그러면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집행위원장 결재라인에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있지요. 지사님 나오시라고 하면 공기도 좀 맞하고 말이지...

김용대 부지사님은 공무원 직급으로는 최고의 직이지요. 1급 관리관이지요.

더 진급이 되면 차관으로 갑니까?

본의원이 경주문화엑스포 도정질문을 본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 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사, 부지사를 상임위에 출석시킬 수는 없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했는데 오늘 그 질문 답변을 보니까 박성환 국장은 합법적인 행위이고 아무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이상한 일이 발생하네요. 사무총장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이지, 그래서 박국장의 답변은 안 들으려고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국장은 잘못된 부분은 시인했고 상임위원회 속기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작년도

애초에 그렇습니다. 2002년도 6월달 500억원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은 300억 승인을 받았습
니다. 2002 년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2003년도 추진하면서 2004년도 착공까지 추진을 하면서 본위원이 상임
위원회에서는 300억 사업을 실시설계 요청을 해서 하지 왜 사업들이 630억원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총장의 답변이 설계 시공업체가 630억원 설계를 해서 왔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시를 630억원 설계를 해오라고 안했는데 시공업체가 630억 설계를 해 올
수 있다고 봅니까?

300억원으로 공모가 되었는데 공모이후에 실시 설계는 630억원짜리 건축물로 설계를 했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00억원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확보한 예산이 300억원이면 300억원에 대한 건축물을 실시설
계를 해서 착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분도 없이
300억 예산확보 이내서 사업을 하지 않고 630억원의 건축물 설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630억원 설계를 해가지고 2004년 12월29일 착공을 했습니다. 630억 건물로 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630억의 실시설계를 가지고...

내부 문건을 보면 착공을 하고 난 연후 2005년도 초에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업무보고가 2월
달에 있었습니다. 2월달 전에 내부 문건에 보면 재단법인 이사장인 지사께 보고했습니다.
'330억의 예산을 확보가 어렵다, 의회에 승인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330억 더 예산 확보가 어
려우니 그러면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2005년3
월달에 추가 변경설계 용역을 4억에 다시... 변경을 하기 위해서. 630억 하니까 도의회에다가
330억 더 예산을 확보하려니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끝에 축소를 해 가지고 하
기 위한 설계변경용역을 줍니다, 3월달에. 맞죠?

그래서 10월달에 변경설계서를 납품받습니다. 10월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소했는 것이
300억 플러스 140억이 추가된 440억짜리 상징건축물로 둔갑했습니다.

그러면 2월달 업무보고할 때는 이게 630억인지, 우리는 300억 건축물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착공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월달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또 작년까지 나온 중기재정계획도 300억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데 느닷
없이 10월달에 납품받아서 의회가 우리가 11월 정례회가 23일인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가 건축물이 440억으로 보고가 되고, 업무보고를 이제 받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상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사무총장 등, 아마 국장도 위증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거짓말 하다 보니, 이걸 은폐시키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
다 보니 행정사무감사를 이틀 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포 문제로.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해서 사실 재단이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재단이사장이 지시를 했는 것인지 630억짜리 건축물로 확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크게 멋지게 한번 지어봐라 했는지 안 그러면 사무총장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630억의 설계를 했는지 이게 아주 아리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부지사께서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630억에, 330억을 증액한 건축물을 짓자고 하면 소위 재단법인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과 상식이 있는데 330억을 갑자기 배 이상 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서 한 건 이사회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통과한 적도 없습니다.

결재는 부지사도 다 결재해 왔어요, 여기. 그리고 아까 자꾸 모른다 이러는데 내부 문건 설계자문회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행정부지사 사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자꾸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보고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공동묘지 가면 죽어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 자체를 2월달에 업무보고도 하고, 확대하려고 하면 대의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우리 도의원들 여기 지금 소풍 오는 겁니까?

여기 놀러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합법적으로 했다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국장이 자꾸 합법적이라는데 이것 안 되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하고 여기 와서는 합법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좋습니다. 2월달에 해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은 피치 못해서 확대해서, 경주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을 확대해서 지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해서 꼭 확대해야 되겠다', 명분을 내놓지도 않고 이것을 전부 숨기다가 11월달 업무보고할 때 느닷없이 내놓은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승인받습니까? 소위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민들한테는 일일이 안 물어봐도 그래도 소위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면 공감대 형성은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든지 이래서 도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인데, 부지사님 그래서 제가 아까 1급 최고위직에 가신 분이 행정학 박사 아닙니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시설계 630억을 할 때 예산 없었죠? 예산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가변경하면서 또 금년 3월달에 4억 예산을 또 없앱니다. 그리고 이사회 어떤 회의록도 없고 경주문화엑스포 예산은 딱 주무르듯이 막 합니까? 가져오라고 하니까 근거도 없고 표지만 갖다 내놓고...(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만 갖다 내 왔어요. 1차, 4차...

그러니 금년도 630억, 애초에 300억 설계를 해 가지고 하든지 300억 설계를 못 해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630억 설계를 해 가지고 확대해 달라든지, 그러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의회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승인을 다시 받아서 하든지 해야 되지, 630억 설계해 가지고

예산 없애고, 금년도 3월달 추가변경 설계해 가지고 4억 없애고, 엑스포는 예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 미국서 가져온 돈이라요?

이렇게 이런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사무총장이란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 도의회 의원 뭐하러 왔습니까? 도의회 구성이 뭐하러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제대로...

그러니 이런 부분을, 이래 놓고도 합법적이라고, 우리 국장이 아주 직무유기를 해요. 부지사님, 세계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보고에 보면 재단이사 겸 행정부지사 사인을 해 놔습니다. 돈 지출하면 해야 안 되겠어요. 이런 것을 알면서 행정행위를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부지사님.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이래도 됩니까? 이걸 지금 알면 우리 농민들이 분통이 터질 거라요. 사업을 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대의명분 아래 절차를 밟고 이래야 되지, 이랬다 저랬다 예산만 없애고 이것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마지막 한 가지...

점점해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고 잘못된 공직자나 엑스포의 직원들은 처벌을 하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바로 부지사나 우리 지사님도 욕 얻어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폐해서 잘못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가서 뭐 하느냐? 우리 신문에도 요새 비판기사 많이 나잖아요.

여하튼 잘못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든 여러 가지 조치는 후속조치를 할 것이고 일단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예, 의장님이 시간이 다 되었다고 빨리 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오늘자 신문입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수도권 공장 180만평 공급’ 이래서 ‘수도권 규제 단계적으로 풀린다, 내년 하반기 수도권 3, 4곳이 공장설립규제 등이 완화되는 시범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어서 2008년부터 5, 6개 권역으로 세분되어서...’ 거의 2008년부터 수도권 규제 완전히 풀어서 지방을 완전히 죽일 작정입니다. 오늘 이 신문 보셨습니까?

대충 알아서 됩니까? 꼭 알아야 되지.

그러니 이 정부가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런 문제, 본의원이 이 질문서 만들어 놓고 매일 고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내가 시골에서 오다가 보니까 신문을 못 봐서 못 고쳤어요. 나중에 이래 신문을 봤는데, 이것 참 우리가 중앙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나 도의회가 앞장서고 이래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총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햇불 들고 한번 서울로 진격을 하든지 한번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

면 이 정권이 이렇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는 거라요. 만만하거든, 이래도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내 가지고 해도 경상도 이 사람들 만만하다 이래 보거든. 본때를 진짜 한번 보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홍 의원 ◎

영덕군출신 기획과학위원회소속 김기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가르치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어렵다 못해 생존위기를 느낄 만큼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폭풍으로 사회·경제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서민경제는 끝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가 하면 지역의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날로 높아져 가는 실업률은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북의 농어민들은 쌀값 폭락, 농가부채의 급증, 초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수없이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도 없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만 있습니다.

우리 도내 모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

평소에 3백만 도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다 분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다 어려운 우리 도민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공무수행에 임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안의 오염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경북의 동해안이 최근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누적되면서 거대한 쓰레기장이다 못해 아예 죽음의 바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양투기지역에서 잡힌 일부 수산물에서는 발암물질까지 검출되면서 지역 어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수산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는 분노감을 감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다의 오염은 동해연안은 물론 독도 근해까지 심각한 사막화 현상을 진행시키고 있어 해양오염은 이제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4년에 도내 22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루 271톤의 하수 슬러지 중 90.9%인 246톤이 동해바다에 투기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동해에 버려지는 우리 도 지역 하수 슬러지 투기량은 2000년 6만5,385톤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9만2,345톤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해양오염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의 고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 동방 125km인 '동해병' 해역의 경우 2003년 81만7,033m³이던 폐기물 투기량이 2004년에는 82만7,353m³에 달했으며 특히 2005년 10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98만197m³에 이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여 폐수류가 62만2,116m³, 오니류가 22만7,331m³, 무기물이 12만8,909m³입니다. 수산 동·식물 잔재물이 1,841m³에 달하고 있어 그야말로 동해를 하루하루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동해안에서의 기름 유출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해양오염은 가속화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동해안 연안에 갯녹음 확산,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 침적,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망, 어구 및 남획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오염된 연안어장 생산성 회복을 위해 복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동해안에서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 살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여전히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날로 그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어장의 쓰레기는 40만톤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연간 100억원의 예산으로 2,600톤 정도를 수거한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수거하는 데만 150년의 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 동해안 연근해 어민들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당장 전면적으로 금지하든지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 연안어장에서 지난 10여년 전부터 해양오염이 심화되어 전복, 성게 등 각종 어패류가 제대로 서식을 못하는 백화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 어자원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립수산물과학원 자원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된 고등어, 갈치 등 9개 어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어획량의 81%가 한번도 산란을 하지 못한 미성어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획물의 소형화는 어업생산의 질적저하와 급격한 자원감소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어족자원의 감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바 우선 기후변화에 따라 회귀어종이 감소하고 생태환경을 무시한 마구잡이식 개발, 그리고 해초대신 각종 그물망 등이 얹혀 산란장 기능이 상실되는 바람에 어패류의 산란마저 사라지고 대구, 문어, 보리새우 등 회유성 어족들은 자취를 감추었으며 대신에 양식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가사리만 모여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연근해 어획량은 1996년 162만톤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04년에는 107만톤으로 격감하였고 그로 인한 어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북한과 중국은 북한 해역 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해 중국 어선들의 북한 조업은 수백 척의 어선들이 남하하는 오징어 떼의 길목을 막고 바닥까지 훑는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채낚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그야말로 싹쓸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동해안 어장의 황폐화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폐어망 등에 대한 인양 작업을 통하여 바다를 정화하여 어자원을 살리는 일이 급선무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연안 황폐화 실태를 보다 면밀히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수역 내 중국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해결의지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어촌 도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걷기가 남녀노소 없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기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현대인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적인 실험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걸으면 기분이 전환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우울증 예방과 치료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이 마음 놓고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도보다는 자동차들이 다니기 편한 차도 중심의 현 도로를 사람들이 걷기에 편한 도로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의 국·지방도로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자동차 편의위주의 도로정책 시행으로 보행자는 물론이고 자전거, 농기계 등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각 지방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안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4년말 현재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로 가운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된 구간은 국도의 경우 1만4,246km 가운데 4.5%인 530km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도보다 사고위험이 더 높고 안전이 열악한 지방도로와 시군도로는 아예 인도설치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국도와 지방도로는 현재 인도가 없어 지방도로를 걷는 것은 목숨을 내건 행동으로 보행자의 안전은 전혀 보장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행 사망자 10명 중 8명꼴로 대도시가 아닌 지방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화를 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 2004년 보행자 사망자 수 3,595명은 2003년도 3,138명보다 14.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북 도내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 2004년 3,335건이 발생하여 231명이 사망하고 3,3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중 국도, 지방도에서의 농기계 관련사고는 265건이 발생하여 17명이 목숨을 잃고 328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향후에 지방도로와 시군도로에 있어서 인도설치 비율을 높이는 강력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산물 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05년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전

에서 경북의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성주참외풍경, 의성마늘, 안동사과 등 3개 브랜드가 파워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안동사과의 경우 과실 공동브랜드 중에서 최고의 공동브랜드로 선정되어 사과의 고장 경북의 자존심을 되찾았다는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지역농산물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시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보도된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말 기준으로 우리 도내의 농산물 브랜드는 무려 773개로 2000년의 425개보다 무려 81.9%나 급증하였으며, 작물별로는 식량이 224개로 가장 많고 과실류 139개, 농산가공 109개, 과채류 91개 등이며 안동에 78개, 포항에 75개, 예천에 58개 등 그야말로 농산물 브랜드는 가히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브랜드가 넘쳐나자 일선 시군들은 그 타개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내건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상당수 시군은 이름만 만들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브랜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공동선별이나 공동출하 등을 통한 품질의 균일화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고 효과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그리고 그를 통해 농민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통합주체 및 관리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동선별장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농산물브랜드를 진정한 농산물 우수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경상북도의 인증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판매에 있어서는 브랜드 경영체가 산지 농가를 조직화 또는 계열화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소매단계에서 경영체의 상표로 유통업체가 판매하거나 혹은, 경영체가 직접 판매하는 브랜드로 통일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외에도 전문화된 농산물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농산물의 위생수준을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 및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경기도 교육청 제2청을 방문하여 초·중·고교 교장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도교

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육자치 말살기더라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될 경우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에 예속되어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현재 광역중심의 교육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시군단위 중심의 교육행정 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본의원이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은 교육에 관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관한 것이며 주거지에 가까운 학교의 발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봤을 때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설치하고 각각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하는 방식은 지방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정된 예산으로 지방교육의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방해가 되며 그나마 있는 교육자원을 분산시키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역교육 문제는 지역의 모든 생활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로 추진되는 지금의 교육행정은 결국 지방의 일반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생활문제 해결에 교육적인 관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행정기관을 별도로 분리·독립시킴으로써 인건비가 증대됨은 물론 사무의 관리비용도 증대됩니다. 결국,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교육비용이 행정비용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 교육이 낙후화되어 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 또는 다른 지방으로 떠나는 결과를 초래해도 어느

누구 한사람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나서려 해도 교육자치를 보장하라고만 합니다. 교육감은 단체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단체장은 교육감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지방교육의 자원을 결집하여 주민의 뜻에 맞는 지방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영국의 경우처럼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의 실천방안을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육은 학교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가 담당하는 것이며, 학교는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 같이 지역사회의 핵심이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수궁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단위 교육자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수요자 만족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9월 15일 「교육불만족 제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전국단위 「2005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전국의 443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5만명을 표집하여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이 결과에서 16개 시·도교육청별 만족도를 보면 부산과 제주가 상위 1·2위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곳은 전북, 전남, 충북교육청이며, 학부모의 만족도로는 전북, 충북, 서울교육청이, 그리고 교사의 만족도로는 대전, 충북, 경기교육청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7개 시교육청의 종합적인 교육 역량을 평가한 2005년도 시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이 2005학년도 전국 시교육청 평가에서 학생성적관리 등 전 부문에 걸쳐 최우수 평가를 받아 부산의 초·중등교육이 전국최고임을 다시 입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불우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보충수업 시스템입니다. 과외를 받을 형편이 못되는 학생들을 권역별로 모아 매일 3시간씩 보충학습을 해주는 제도도 있고, 병원에 장기입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병원학급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만족도 전국 1위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금은 전국 꼴찌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육보조금은 식당, 컴퓨터실, 체육관 등 학교시설

건립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만족도 조사의 일부 항목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 환경과 교육만족도는 불가분 관계인만큼 의외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순위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우리 경북 교육청은 이러한 만족도조사와 같은 순위에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위 순위에 못 들었다고 하여 이를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이 결과를 보면서 경북도교육청은 과연 우리 경북도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로부터 아무런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교육행정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전인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도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300만 도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충분히 주지 못하였다면 혁신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제가 오전에 질문한 답변 중에 내년에 전국에 경상북도 한 곳, 강원도 한 곳, 전라도 군산 한 곳, 세 곳이 지금 해양투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해양오염물 대책에 있어서 물론 많은 관심을 가졌습시다라는 종묘사업이나 치어방류, 또한 바다목장, 바다숲, 수백 억을 우리 도에서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투입되면 뭐합니까? 해양오염물이 수십 만 톤이 동해병 지역에 투기됨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바다백화현상이나 각종 어패류나 치어 다 발암물질까지 됐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어하냐면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따오는 그런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과연 우리 도에서 수백 억, 바다목장사업부터 시작해서 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해양투기를 안 하고 육지에서 해양오염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경주나 포항이나 영덕이나 울진이나 울릉같은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육지에서 각종 오폐수를 다 동해안 지역에 버리니까 어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자꾸 불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국장께서 육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소각장을 만들지만 특히 경상북도 5개 시군에 해양오염물 투기에 있어서 그런 소각장이나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오전에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나 하면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2조원 이상 경상북도교육청에 줍니다, 또 심의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 도의원은 각 지역에 가면 교육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돈만 주었지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에 과연 경상북도교육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원이 아무 할 역할이 없고 가면 도의원 뭐하냐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교육위원회를 예를 들었습시다마는 교육위원회를 우리도 광역위원회에 포함시키고 교육부지사 역할을 경상북도지사 밑에 두는 그런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전국 시도에 처음으로 행정낭비가 아닌 올바른 자치교육제도에 대해서 건의할 용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혁신적인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전에 도민교육에 대한 만족감과 혁신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타시도와 비슷한 답례입니다. 부산, 전북, 전남, 충북, 서울,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적인 교사나 교감, 교장의 교육정책보다는 학부모, 학생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런 지역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람들에게 의견을 수렴받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우리도의 전체적인 교육정책을 해주십시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타시도와 비슷한 답을 합니다. 내년에 과연 경상북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은 답변이 없는 거예요.

내년에 어느 시에 어느 곳에 몇 군데 교육하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장님,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3개 우리 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그런 기구에 주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전체 지방자치단체장을, 그 주위에 있는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에, 예를 들어서 경산이면 경산, 영덕이면 영덕, 거기에 있는 실정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교사, 교감,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만 받으니까 실질적인 이런 만족도가 부족한 것이예요, 경상북도가...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상태 의원 ◎

울릉군 출신 행정사회위원회 이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정과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이의근 지사님과 경북 교육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오신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간의 도정 전반을 살펴볼 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으나 의회 및 집행부 구성원 모두가 동고동락하면서 경북 전체 도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괄목할 만한 성과와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도에 방폐장 부지가 선정된 이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선정이라는 도정 최대 현안문제에 직면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제203회 정례회는 지난 '91년 부활된 의정활동 제4기를 정리하는 회기일 뿐만 아니라 민선3기를 매듭짓는 중요한 회기이기 때문에 금번의 도정질문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 하나하나가 ‘의정 4기’와 ‘민선3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차원과 더불어 도정과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시종(始終)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미리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도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는 첫해인 올해, 금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도 720만석에 비해 50만석이나 감소하였음에도 10월 초 기준, 쌀 한가마니 80kg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2.3%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국회에서 쌀협상비준안이 통과됨으로써 농민들은 크게 우려하면서 생존권 차원의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농촌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금년도 쌀 생산량은 435만석으로 전년도 458만석보다 약 4.9%인 23만석이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하락폭인 12.3%보다 높은 14.3%로 집계되고 있으며, 실제 산지 농민들이 체감하는 쌀값 하락세는 농정당국의 조사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농업분야에 대한 42조원 투입과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45조원 투입 등 총 87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농업분야에 투입되었으나 농정문제 해결에 별반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작년 노무현 정부가 순수 국고지원으로 향후 10년간 농업분야에 119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농민 대다수는 농업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듯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도가 도 자체 차원에서 보다 현실성 있고 구체성이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중장기 농업정책의 추진방향을 보면, 농림부 중장기 투융자계획과 연계, 지역 농정 발전전략과 투융자 계획을 수립,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과 농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 지역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및 추진체계 정립,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 및 농촌이 지닌 어메니티(amenity)를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농외소득 증대를 추구한다는 경북농업·농촌발전 추진전략, 그리고 기술개발, 수출농업, 식품산업 육성,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자연순환형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확대를 통한 경북농업 체질 강화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간 도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기술개발 실적, 수출농업 육성 및 식품산업 육성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농업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과 벤처농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의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 등 쌀 농가 특별지원 2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 구체적 지원계획과 추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DA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 및 농촌을 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DDA협상의 구체적 대응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 지역 우수농산물의 품질차별화를 유도하여 판로를 확대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경북농산물 브랜드가 2004년 말 현재, 총 773개나 되고, 비슷한 브랜드가 우후죽순처럼 넘쳐나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신이 증폭되고 있어 브랜드 선별 및 관리, 품질규격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자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경북농산물 브랜드의 관리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 및 재난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사망 101명, 부상 125명의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 2003년 2월 사망 192명, 부상 148명이라는 초유의 피해를 낸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승객방화사건’ , 그 해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RUSA)’ , 작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MEMI)’ , 금년 9월 6일~7일 양일간에 걸쳐 울릉도를 비롯한 한반도 남동부 해안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낸 태풍 제14호 ‘나비(NABI)’ 등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인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재해 및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도는 「재난상황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 근무인원을 보면, 실장 5급 1명, 요원 6급 3명, 7급 3명 등 계 7명이 전부이며, 근무인원이 이렇다 보니 근무조도 2인 1개조, 3개 반으로 편성하여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근무인원으로 날로 복잡·다단해 가고 있는 재난 및 재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소방본부 등 다원체제로 되어있는 현 재해대책 시스템을 단일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본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긴급대응체계구조시스템」, 「지진경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실적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지난9월 발생한 태풍, ‘나비’ 피해 복구현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도의 여성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진출이 활발해져 가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도의 경우 전체인구 271만5,000명 중 49.7%인 135만 명이 여성인구이며, 2004년 기준 여성취업 현황을 보면, 도 전체 1,40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 61만9,000명이 고, 이 중 취업인구는 60만7,000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 55.7%, 고용률 54.6%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북도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5.7%로 전국 평균 49.9%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판매직이 전체 33.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임 직원 및 관리자 비율은 겨우 0.2%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임금수준, 승진, 보직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복지수준은 아직 미흡함으로 여성복지가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여성복지 관련예산 증감 추이는 2003년도

50억4,100만원,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무려 522%나 증가한 313억4,6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124% 증가한 740억4,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로 보육아동 업무 이관에 따른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예산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가도우미사업에 520명, 4억6천8백만원과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에 6개소 3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도의 여성인구 비율 및 경제활동 인구를 감안할 때 대단히 미흡한 사업 규모라고 판단하고 싶은데, 답변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농촌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폭 예산투입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여성복지, 여성권익증진, 여성단체사업지원, 여성관련 시설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실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4%로 높아져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23.1%로 '초(超)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5년 6월 현재, 노인인구는 도 전체인구 269만3,000여명의 13.2%인 35만6,000여명이고, 도내 농어촌 13개 군의 노인인구는 전체 58만5,000명 중 11만7,000명으로 무려 20%나 차지하여 이들 지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도 전체 지역이 '고령사회'의 기준인 14%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북은 '고령사회'로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 복지시설 확충, 노인 취업대책 등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복지예산을 보면 도 일반회계의 겨우 3.2%대 수준으로 이와 같은 예산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에 대단히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노인복지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을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기회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관리사업,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도의 노인복지의 정책방향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선, 공적 노인요양 체계구축,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35만6,000여명 중 치매노인은 약 2만9,500여명으로 추정되며, 독거노인 수도 약 24만6,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과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의 구체적 병상실적 및 확충방안, 그리고 치매노인 지원실적, 치매가족의 치료비 및 부양부담 경감대책을 밝혀 주시고, 독거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확충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릉군 관련 제반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동해바다에서 항상 의연한 자태로 국토를 수호하면서 3,755가구, 9,200여명이 살아가고 있는 울릉도를 지역구로 삼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기회를 통해 울릉군 제반 현안 문제 몇 가지를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 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릉 일주도로는 지난 1963년부터 2001년까지 일방향으로 39.8km만 개통됨으로써 작은 사고에도 교통 두절이라는 2차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의 안정적 기반구축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청정해안을 보유한 천혜의 관광명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울릉 일주도로를 국도로 승격하여 나머지 유보구간 4.4km(내수전~섬목간)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답변자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정책적 지원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경비행장 건설 및 경비행기 또는 대형헬기 취항문제입니다.

울릉군은 항공교통수단 유치로 해상 일변도의 교통한계성을 극복하고, 주민생활 편의의 획기적 향상으로 정주인구 감소방지, 동해안과 울릉도·독도를 연계한 사계절 관광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울릉군 북면 천부4리 일원에 예상사업비 2,790억원으로 활주로 1.2km,

여객터미널 550㎡, 3대 동시주기의 계류장을 시설기로 하고 연간 20만명 수용 가능하도록 70인승 단거리 이착륙기(SLOT) -DHC-410기종의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10월, 건설교통부에 의한 경제성 저하를 이유로 유보된 이후 거의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울릉 경비행장 건설과 경비행기 또는 대형헬기 취항은 그 접근성과 환경영향이 양호하며 영유권 확보, 해양자원개발, 관광지 조성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경제성이 낮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답변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지난 4월, 우리 도가 한아엔지니어링 측에 도비 30억원과 민자 50억원을 자본금으로 지역 민항을 설립하여 7월말까지 포항~울릉간 헬기를 취항한 뒤, 자본금을 늘려 소형항공기를 도입, 단거리 국제선에 취항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상북도가 민간업체에만 의존하고 업무를 떠넘기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을 포기했다는 말들이 무성하는데, 그 진의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제 실시에 따른 도비지원 건의입니다.

현재 울릉군 의료원은 도서지역 군민의 보건과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내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바라는 군민들의 욕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외적으로는 의료복지 부분의 정주기반 부족으로 울릉군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건의료를 대행할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보건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의료보건 업무대행제 실시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전문의 3명 충원, 전문간호사 채용(계약직), 의사숙소 임차대 등 6억1,200만원으로 도비 70%, 군비 30%로 2005년 9월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비 70%인 4억3,000만원 지원하여 주는 것이 낙후된 울릉군 의료서비스 개선과 지역주민 중심의 진료체계 기반구축,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바라는 군민의 욕구충족, 환자의 원거리 진료에 소요되는 부가적 비용절감 효과를 위해 합리적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답변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본의원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도비지원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강화에 따른 개선대책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은 시·군이 3,000억원 이상, 이재민 8,000명 이상이며, 읍·면은 6백억원 이상, 이재민 1,600명 이상으로 지역별 특성, 인구수, 재정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피해액 기준자체가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제, 지난 여름 제14호 태풍 ‘나비’로 인한 울릉군 전체 피해액은 199억원, 전체인구 9,356명에 이재민 127세대 273명이었으며, 울릉군 서면의 경우 피해액은 172억원, 전체인구 1,487명에 이재민 88세대 20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정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등 일반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재산피해액 규모를 재난 및 안전관리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지방재정 여건 및 지역별 자산가치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최소 행정구역단위인 읍·면·동 미만의 국지적 피해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추세에 맞게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이재민 수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답변자는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중앙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작금의 황폐화 된 교육현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e-독서친구’라는 단계별 독서 메뉴얼을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반갑고 신선한 소식에 격려를 보내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원평가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교육의 최대현안 문제로 대두된 것 중의 하나가 교원평가제 도입문제입니다.

지난 11월 2일, 교육부총리는 11월 8일부터 전국 1만개 학교 중 50곳을 선정,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히고 내년 2학기부터 전 학교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한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이해당사자들은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 퇴출방침 재논의와 교원증원 및 수업경감 등을 요구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오다가 조직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내홍으로 급기야 지난 11월 27일 전교조 위원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다수 대학들이 대학교육 개선을 위해 이미 교수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에게 교사역량제고와 학교교육 개선방안으로 회원각국에 교원평가제 도입을 적극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원평가제 도입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교원평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제개편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15일 교육부총리는 제3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에 참석하여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에서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적 학제 개편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16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식기반사회 학제 발전방안”의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6-3-3-4학제를 유치원→초등학교5년→중학교3년→고등학교4년→대학교4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공식의견으로 채택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이후 교육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다시 거론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 측의 학제개편 주장에 의하면, 현행학제는 1951년에 도입된 이래 53년간이나 운영되어 온 것으로 이는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세계 선진각국의 교육이 고교중심으로 그 축이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실제 교육관계자의 학제개편 설문조사에서 무려 79.3%가 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고교과정을 4년으로 연장하여 전반 2년은 기본교육과정으로, 후반 2년은 진학 및 취업준비 시기로 하는 이번 학제개편 방안의 제기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교원충원, 시설확보 등 부작용과 문제점도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방안이 채택된다면 중등교사 양성 소요기간은 얼마로 보시는지, 또 교실은 어느 정도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학제와 이번에 제시된 유치원→초등학교5년→중학교3년→고등학교4년→대학교4년과 더불어 과거에 제시된 적이 있는 유치원→초등학교6년→중학교4년→고등학교2년→대학교4년 중 우리 교육현실에 가장 적합한 학제는 어느 것이라고 보시는지 개인적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선중 의원 ◎

안동시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김선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의근 도지사님, 지역인재양성에 노심초사하시는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주 방폐장 유치가 경주로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3백만 도민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은 전에 볼 수 없었던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 혁신도시 입지선정,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 시장개방에 대한 농정대책 등 경북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현명하고도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조치는 지역경제를 아예 말살하자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기조정책과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으로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가시화될 경우 가뜰이나 경북의 취업률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의 대규모 실업난을 가중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일수룩 도민의 미래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겠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통하여 3백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운영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세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국가업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고 예산명칭도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뀐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에서 행정자치부소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오히려 축소 배정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경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수많은 저소득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서민층을 복지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안동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액에서 28억6,000여만원이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 지역의 사정이 아니라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모두 예산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경북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기존 복지사업만 간신히 유지하는 상태이고 신규사업과 시설확충은 예산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현재 총 105개소의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2,068명의 종사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체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따르면 16개 시·도별로, 우리 경북이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 886억원 중 확보한 예산은 629억원에 그쳐 71.1%의 가장 낮은 예산확보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 지역이 날로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006년부터 내국세의 0.94%로 종전의 0.83%에서 상향조정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보는 이상 부족분은 결국 지방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북 2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복지사업을 소홀히 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현재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관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어느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도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문제만큼은 아직도 관선시대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즉 경북도와 시군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평등한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과거 관행에 따름으로써 시군 공무원들은 구조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군의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을 전입시험으로 선발하여 도에 충원을 시키고 있어, 시군이 많은 비용을 들여 인재를 양성해 놓으면 도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인력을 차출하는 셈입니다. 또한 경북도와 시군간의 공무원들은 5급 승진에 10여년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23개 시군에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것은 도출신 공무원들을 위한 배려일 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하종속관계의 불평등한 인사제도라 할 것입니다. 실제 도내 23개 시군에 3급 부단체장을 제외한 5급이상 직원 가운데 시군정원 대비 도출신 비율을 살펴보면, 칠곡군의 경우 정원 29명 중에서 도출신 7명이 차지하여 24.1%나 되며, 군위군 18.2%, 문경시 15.9% 등으로 전체 935명 정원 중 도출신이 105명으로 총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급의 경우에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직원을 도에서 시·군으로 발령

내고 있는데 이 역시 인사교류 명목으로 도청직원의 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관행들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간의 노골적인 차별인 것입니다. 또한 소위 낙하산으로 시·군에 배치받은 공무원은 해당 시·군 지역에 오래 근무하지 않고 1~2년 후에는 원대 복귀하는 관행에 따라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일을 하려고 해도 지역실정을 잘 몰라 업무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경상북도 인사관리규정은 과거의 관선시대의 규정들로 여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일은 지역민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참 뜻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전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대체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기록적인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는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토양, 대기, 수질오염, 나아가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 사회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환경문제와 결부된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은 청정 대체연료의 개발에 대해 경제성과는 무관하게 차세대 대체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바이오 디젤과 같은 청정 유동성 대체연료의 개발이 대단히 시급하면서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즉 바이오 디젤은 피마자 등과 같은 재생가능한 식물자원에서 생산되므로 에너지자원의 고갈이 없고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확대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바이오 디젤을 일반주유소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고시를 만들고 있으며, 지난 11월17일에는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바이오 디젤 5%와 경유 95%를 섞은 BD5를 본격 보급키로 하는 시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바이오디젤의 생산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연간 40만톤의 바이오디젤이 생산

되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100원인 경우에 단순히 바이오디젤 가격만 환산하여도 4,400억원의 경제효과는 물론 부수적으로 물류비용, 고용창출, 부대 장치산업 확대, 그리고 유희농지 활용 등이 가져오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천문학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에서 본다면 바이오디젤의 개발은 비슷한 외화 지출을 막고 엄청난 수입대체효과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난 2004년에 피마자를 대량 생산하는 필리핀의 생물자원연구소와 바이오디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바이오디젤의 선두업체인 (주)가야에너지를 방문하여 대량의 피마자를 이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피마자의 대량생산이 가능할 경우 바이오 디젤유의 원료로 사용할 것을 확약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바이오디젤과 같은 제2의 대체에너지를 연구·개발하여 이를 대량생산하는 체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상북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절약대책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176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대상지역이 시·도별로 결정된 이래 우리 경북은 지난 9월23일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또 10월14일에는 혁신도시 후보지 신청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3개 공공기관의 입지후보를 평가하게 되며 혁신거점으로 발전 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등이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 올 하반기에 공공기관 입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와 경북도 그리고 이전기관의 부기관장으로 도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 이전시기와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이행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07년부터 본격 혁신도시건설에 착수,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최대 50만평 규모의 혁신도시 건설을 마친다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더딘 일처리와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아무런 원칙과 소신없이 평가기준과 방법을 소위원회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군 간의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제는 권역별 갈등까지 나타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붐으로 지가가 오르고 있는 등의 부작용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국토의 전체적인 균형을 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으로 이전대상기관의 효율성, 지역거점으로 발전가능성, 도시개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혁신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을 한데 모으고 혁신도시에 교육기관과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불편은 해소될지 모르겠으나 지역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는 지역에서 또 다른 심각한 갈등을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하려는 일부 논의는 전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가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향후 혁신도시 입지선정 구체적인 계획 일정, 그리고 기준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후보지간의 과열경쟁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과 혁신도시 선정 이후 탈락지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도청 산하기관과 각 사업소도 기능별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는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지난 11월2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19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쌀개방 반대시위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부상을 입었는가 하면 농민 한 분은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상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와 고인의 명분을 중심으로 빌고자 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쌀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나 사전 대비책이 있었다면 과연 어느 농민이 시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그동안 농민을 기만한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편으로 쌀비준안의 통과로 인하여 쌀시장 전면개방을 10년간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정부 당국은 스스로 위안을 삼는 듯 하나 우리 농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대안도 없이 밥쌀용 수입쌀 시판 허용과 의무 도입물량 2배 확대라는 무서운 댓가를 또 치러야 합니다.

이제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은 쌀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국내 농업수익의 50%를 차지하는 이 국산쌀의 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것과 진배 없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올해는 더욱이 추곡수매마저 없어지면서 현재의 쌀값은 20% 이상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부가 쌀값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준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의 소득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농촌 농업을 위해 119조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들어가게 되어 있는 예산을 그대로 담아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농업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모두 하나같이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린 데다 부실한 집행관리 등으로 결국은 공염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쌀을 자체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형제, 친척, 지인들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보지만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쌀협상비준안이 결국은 통과됨에 따라 농민과 농촌의 소득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소득보전정책을 보다 우선적으로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우리 농업을 근본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쌀 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속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준안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탁상공론에만 치우쳐있지 말고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그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업과 농촌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그 어떠한 것도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문내용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지사님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 록

- 조례안 : 10건
- 예산안 : 4건
- 동의안 : 18건
- 결의안 : 1건
- 기타안 : 1건

【조례안 : 10건】

-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의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중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u>지방자치법시행령</u> (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 「 <u>지방자치법시행령</u> 」----- ----- ----- ----- -----	법령 표기법에 의함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생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④(생략)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청구심의회 중립성·투명성 강화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②(생략) <u><신 설></u>	제4조(임기 및 해촉) ①~②(현행과 같음) ③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원 임기 명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1조(수당 등)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u>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 ----- -----	법령 표기법에 의함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2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공무원증규칙”을“「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

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도지사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2호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중 제1호 “병역법”,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각각“「병역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4장(제26조) 및 제5장(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 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비 고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제15조(-----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②-----토요일 또는 공휴일 -----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u>공휴일</u>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 ----- -----<u>토요일</u> 또는 <u>공휴일</u> ----- ----- -----.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삭 제>
제18조 ② ---“공무원연금법” ③ (생략) 2. 제19조 제4항의 규정----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신 설>	제18조 ②-----「공무원연금법」 ③ 현행과 같음 2. 제19조 제5항-----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u>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u>
제23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	<삭 제>

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
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
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다.

⑧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승선후가를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
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
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
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생 략)

제2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
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6조(겸직허가)①공무원이 지방공

<삭 제>

<삭 제>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
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 제>

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
직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
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
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
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

<삭 제>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
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
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
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
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
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
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업무 추진

제1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동조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 제9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제11호 내지 제26호로 하며, 동조 제4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업 및 공공·일반측량 등록 관리

4. 온천관리

10. 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2854호(2005.1.27)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부칙 제3항 중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u><신설></u>	제6조(.....) 1. ~ 13.(현행과 같음) <u>14. 공공기관의지방이전업무추진</u>	공공기관 이전지원단 신설
제14조(건설도시재난국) 건설도시 재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u>3. 전문건설업 면허 및 온천관리</u> <u><신설></u> <u>4. ~ 8. (생략)</u> <u><신설></u> <u>9. ~ 24. (생략)</u>	제14조(.....) 1. ~ 2.(현행과 같음) <u>3. 건설업 및 공공·일반측량 등록관리</u> <u>4. 온천관리</u> <u>5.~9.(현행 제4호 내지 제8호와 같음)</u> <u>10. 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리</u> <u>11.~26.(현행 제9호 내지 제24호와 같음)</u>	중앙사무 지방이양
부칙(2005. 1. 27) ①~②(생략) ③(한시기구) 산림자원종합개발 사업소는 <u>2005년 12월 31일까</u> <u>지</u>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칙(2005. 1. 27) ①~②(현행과 같음) ③(한시기구) <u>2007년 6월 30일 까지</u>	존속기한 연장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각호 외의 부분중 “4,021”을 “4,050”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836”을 “1,865”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한시정원) 도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별표3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875호(2005.6.27)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 계		4,050	1,159	93	2,405	393
정 무 직		1	1			
일 반 직	소 계	1,331	956	55	76	244
	2~3급	1		1		
	3 급	7	6		1	
	4 급	64	43	7	5	9
	5 급	249	200	8	17	24
	6 급	452	327	18	27	80
	7 급	477	340	20	23	94
	8 급	81	40	1	3	37
별 정 직	소 계	35	24	5	5	1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4	4			
	6급상당	14	8	2	4	
	7급상당	6	5		1	
	8급상당	6	4	1		1
연 구 직	소 계	198	2		161	35
	연구관	28	1		26	1
	연구사	170	1		135	34
지 도 직	소 계	28			25	3
	지도관	7			6	1
	지도사	21			19	2
소 방 직	소 계	2,048	51		1,997	
	소방정	17	2		15	
	소방령	39	9		30	
	소방경	76	7		69	
	소방위	141	11		130	
	소방장	278	12		266	
	소방교	574	9		565	
	소방사	923	1		922	
기 능 직	소 계	365	125	33	97	110
	6 급	12	5	2	3	2
	7 급	32	18	3	5	6
	8 급	55	12	5	17	21
	9 급	118	36	4	37	41
	1 0 급	148	54	19	35	40
교 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1			11	

[별표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원		존속기한	비고
	계	내역		
합계	86	일반직 : 4급5, 5급18, 6급23, 7급23, 8급6 연구직 : 연구사4 기능직 : 9급3, 10급4		
혁신분권담당관실	14	일반직 : 4급1, 5급4, 6급5, 7급4	2007. 6. 30	
공공기관이전지원단	10	일반직 : 4급1, 5급3, 6급3, 7급3	2008. 10. 30	
재정과	4	일반직 : 5급1, 6급1, 7급1 기능직 : 10급1	2006. 12. 31	복식부기업무
산림환경연구소	4	일반직 : 5급1, 6급1, 7급1, 8급1	2006. 12. 31	조경사업추진
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17	일반직 : 4급1, 5급4, 6급5, 7급6 기능직 : 10급1	2006. 12. 31	
전국체전기획단	15	일반직 : 4급1, 5급3, 6급3, 7급6, 8급1 기능직 : 10급1	2006. 12. 31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22	일반직 : 4급1, 5급2, 6급5, 7급2, 8급4 연구직 : 연구사4 기능직 : 9급3, 10급1	2007. 6. 30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4,021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836명</u> 2.~4.(생략) <u><신 설></u>	제2조(.....).....<u>4,050명</u> 1..... : <u>1,865명</u> 2.~4.(현행과 같음) 제6조(한시 정원) 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4와 같다.	공공기관이전 지원단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증원
부 칙(2005. 6. 27) ①(생략)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집행기관 의 정원 중 90명은 한시정원으로 서 혁신분권담당관실 운영인력 14명(4급1, 5급4, 6급5, 7급4)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재정과 복식부기업무 추진인력 4명(5급1, 6급1, 7급1, 기능10급1)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교문화권개발 사업단 운영인력 14명(4급1, 5급3, 6급3, 7급5, 기능10급2)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합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단 운영인력 17명(4급1, 5급4, 6급5, 7급6, 기능10급1) 및 전국체전기획단 운영인력 15명 (4급1, 5급3, 6급3, 7급6, 8급1, 기 능10급1)은 2006년 12월 31일까 지, 산림환경연구소 4명(5급1, 6급 1, 7급1, 8급1)은 2005년 12월 31 일까지,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 소 운영인력 22명(4급1, 5급2, 6급 5, 7급2, 8급4, 연구사4, 기능9급3, 기능10급1)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 운영한다.	부 칙(2005. 6. 27) ①(현행과 같음) <u><삭 제></u>	한시정원을 본문에 정함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의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의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의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식재료의 확인 및 검사요구 등)①학교운영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다음 각호의 식재료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식재료는 원산지 파악 또는 통관절차에 관한 자료를 식재료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요구를 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요구 자료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
2.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식재료의 유해성 시험 성적서 제출을 식재료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식재료 공급자는 요구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
3.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자의 경비 부담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배·양식·채집·사육 등에 대한 과정을 현지 확인

②학교운영위원회 확인 결과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품질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이 현저하게 의심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식재료 채택에서 배제 또는 직접검사 등의 조치를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7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식재료 공급자는 우수농수축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농수축산물 공급내역을 시장·군수가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식재료 공급자가 의무를 해태하거나 제4조 제4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 ----- ----- ②----- ----- ----- ----- ③----- ----- ----- ----- ④----- ----- ----- ----- ----- ----- 제7조의2(식재료의 확인 및 검사요구 등)①학교운영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다음 각호의 식재료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수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1.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식재료는 원산지 파악 또는 통관절차에 관한 자료를 식재료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요구를 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요구자료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 2.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식재료의 유해성 시험 성적서 제출을 식재료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식재료 공급자는 요구자료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 3.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자의 경비부담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배·양식·채집·사육 등에 대한 과정을 현지 확인 ②학교운영위원회 확인 결과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품질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이 현저하게 의심되거나 간급을 요할 경우에는 식재료 채택에서 배제 또는 직접검사 등의 조치를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식재료의 확인 및 검사요구’ 조항을 신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2. 회의안건
3. 참석자 명단
4. 회의진행 사항 등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3.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경상북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2. 지역응급의료계획의 변경

3.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2월 16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 을 “「식품위생법」” 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을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으로 하고, 제2조제2호의 “시설개선자금” 을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으로 하며, “시설개선 및 영업” 을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8호로 한다.

1. 영업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4.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제3항중 “영제39조의2” 을 “영제39조의3”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조(정의) 1. “영업자”라 함은 <u>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u>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 영업장의 <u>시설개선 및 영업에</u>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3. (생 략) 제4조(기금의 용도) ①(생략) 1. <u>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u> <u>위한 융자사업</u> 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u> <u>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u> <u>활동지원</u> 3.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1. “영업자”라 함은 「<u>식품위생법</u> <u>시행령</u>」(이하 “<u>영</u>”이라 <u>한</u> <u>다</u>)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u>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u>”이라 함은……영업장의 <u>위생관리</u> <u>시설개선 및 영업에</u>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u>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u> <u>법률</u>」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u>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u> 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u> <u>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u> <u>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u> <u>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u> <u>동지원</u>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u> <u>포상금 지급의 지원</u>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이 (법률 제7374호, 2005.1.27)공포되어, 2005.7.28로 시행됨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4.~ 6. (생략)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3조①~②(생략) ③ 영제39조의2의 기금귀속 비율에 따라 시장·군수가 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영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5.~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제39조의3의 기금귀속 비율에 따라 시장·군수가 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영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2월 2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
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별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합 계	247	총 정수 284인(비례대표 37, 지역구 247)
포항시 의원정수 32인(비례대표 4, 지역구 28)		
포항시“가”선거구	2	홍해읍
포항시“나”선거구	3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포항시“다”선거구	3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포항시“라”선거구	3	두호동, 학산동, 중앙동, 죽도1동
포항시“마”선거구	3	용흥동, 양학동, 죽도2동
포항시“바”선거구	3	해도1동, 해도2동, 송도동, 상대2동
포항시“사”선거구	3	효곡동, 대이동, 상대1동
포항시“아”선거구	2	구룡포읍, 장기면, 대보면
포항시“자”선거구	2	연일읍, 대송면
포항시“차”선거구	2	오천읍
포항시“카”선거구	2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경주시 의원정수 21인(비례대표 3, 지역구 18)		
경주시“가”선거구	3	천북면, 용강동, 황성동
경주시“나”선거구	2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경주시“다”선거구	2	황오동, 월성동, 동천동
경주시“라”선거구	2	불국동, 보덕동, 외동읍
경주시“마”선거구	3	안강읍, 강동면
경주시“바”선거구	2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경주시“사”선거구	2	현곡면, 중부동, 성동동, 성건동
경주시“아”선거구	2	선도동, 탑정동, 황남동
김천시 의원정수 17인(비례대표 2, 지역구 15)		
김천시“가”선거구	2	아포읍, 남면
김천시“나”선거구	2	농소면, 감천면, 조마면
김천시“다”선거구	2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김천시“라”선거구	2	용암동, 대신동, 지좌동
김천시“마”선거구	2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김천시“바”선거구	2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김천시“사”선거구	3	성남동, 평화동, 양금동, 대곡동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안동시 의원정수 18인(비례대표 2, 지역구 16)		
안동시“가”선거구	2	풍산읍,북후면,서후면
안동시“나”선거구	2	풍천면,일직면,남후면
안동시“다”선거구	4	태화동,평화동,안기동,옥동,송하동
안동시“라”선거구	2	와룡면,예안면,도산면,녹전면
안동시“마”선거구	2	남선면,임하면,길안면,임동면
안동시“바”선거구	4	중구동,명륜동,용상동,서구동,강남동
구미시 의원정수 23인(비례대표 3, 지역구 20)		
구미시“가”선거구	2	송정동,전주원남동,광평동
구미시“나”선거구	2	원평1동,원평2동,지산동,도량동
구미시“다”선거구	2	형곡1동,형곡2동
구미시“라”선거구	2	신평1동,신평2동,비산동,공단1동,공단2동
구미시“마”선거구	2	상모사곡동,임오동
구미시“바”선거구	2	인동동
구미시“사”선거구	2	진미동,양포동
구미시“아”선거구	2	선산읍,무을면,옥성면
구미시“자”선거구	2	고아읍
구미시“차”선거구	2	도개면,해평면,산동면,장천면
영주시 의원정수 14인(비례대표 2, 지역구 12)		
영주시“가”선거구	3	풍기읍,순흥면,단산면,부석면
영주시“나”선거구	3	상망동,하망동,영주1동,영주2동,가흥2동
영주시“다”선거구	3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안정면,봉현면
영주시“라”선거구	3	휴천1동,휴천2동,휴천3동,가흥1동
영천시 의원정수 12인(비례대표 2, 지역구 10)		
영천시“가”선거구	2	완산동,남부동,서부동,북안면
영천시“나”선거구	3	금호읍,대창면,청통면,신녕면,화산면
영천시“다”선거구	2	동부동,중앙동
영천시“라”선거구	3	자양면,임고면,고경면,화북면,화남면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상주시 의원정수 17인(비례대표 2, 지역구 15)		
상주시“가”선거구	3	함창읍,외서면,은척면,공검면,이안면
상주시“나”선거구	2	사벌면,중동면,낙동면
상주시“다”선거구	2	북문동,계림동,동문동
상주시“라”선거구	2	청리면,공성면,외남면
상주시“마”선거구	2	남원동,동성동,신흥동
상주시“바”선거구	2	모동면,모서면,화동면
상주시“사”선거구	2	내서면,화서면,화북면,화남면
문경시 의원정수 10인(비례대표 1, 지역구 9)		
문경시“가”선거구	3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문경시“나”선거구	2	점촌2동,점촌4동,점촌5동
문경시“다”선거구	2	영순면,산양면,산북면,동로면
문경시“라”선거구	2	호계면,점촌1동,점촌3동
경산시 의원정수 15인(비례대표 2, 지역구 13)		
경산시“가”선거구	3	중앙동,동부동,남부동,북부동
경산시“나”선거구	3	서부1동,서부2동,중방동
경산시“다”선거구	4	하양읍,진량읍,와촌면
경산시“라”선거구	3	자인면,용성면,남산면,압량면,남천면
군위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군위군“가”선거구	3	군위읍,소보면,효령면
군위군“나”선거구	3	부계면,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의성군 의원정수 13인(비례대표 2, 지역구 11)		
의성군“가”선거구	3	의성읍,단촌면,점곡면,옥산면
의성군“나”선거구	2	사곡면,춘산면,가음면,금성면
의성군“다”선거구	2	봉양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
의성군“라”선거구	2	구천면,비안면,안계면
의성군“마”선거구	2	단밀면,단북면,다인면
청송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청송군“가”선거구	3	청송읍,파천면,진보면
청송군“나”선거구	3	부동면,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영양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영양군“가”선거구	3	영양읍,일월면,수비면
영양군“나”선거구	3	입암면,청기면,석보면
영덕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영덕군“가”선거구	3	영덕읍,강구면,남정면,달산면
영덕군“나”선거구	3	지품면,축산면,영해면,병곡면,창수면
청도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청도군“가”선거구	3	청도읍,운문면,금천면,매전면
청도군“나”선거구	3	화양읍,각남면,풍각면,각북면,이서면
고령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고령군“가”선거구	3	고령읍,덕곡면,운수면,쌍림면
고령군“나”선거구	3	성산면,다산면,개진면,우곡면
성주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성주군“가”선거구	2	성주읍
성주군“나”선거구	2	선남면,용암면,월항면
성주군“다”선거구	3	수륜면,가천면,금수면,대가면,벽진면,초전면
칠곡군 의원정수 10인(비례대표 1, 지역구 9)		
칠곡군“가”선거구	2	왜관읍
칠곡군“나”선거구	2	지천면,동명면,가산면
칠곡군“다”선거구	3	북삼읍,약목면,기산면
칠곡군“라”선거구	2	석적면
예천군 의원정수 9인(비례대표 1, 지역구 8)		
예천군“가”선거구	2	예천읍,보문면
예천군“나”선거구	2	용문면,상리면,하리면,감천면
예천군“다”선거구	2	호명면,지보면,풍양면
예천군“라”선거구	2	유천면,용궁면,개포면
봉화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봉화군“가”선거구	2	봉화읍,물야면
봉화군“나”선거구	2	봉성면,재산면,명호면,상운면
봉화군“다”선거구	3	법전면,춘양면,소천면,석포면
울진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울진군“가”선거구	2	울진읍,서면,근남면
울진군“나”선거구	2	북면,죽변면
울진군“다”선거구	3	평해읍,원남면,기성면,온정면,후포면
울릉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울릉군“가”선거구	4	울릉읍
울릉군“나”선거구	2	서면,북면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12월 2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운영조례”를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연수생”을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연수생”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설 사 용 료 (제7조 관련)

(단 위 : 원)

시설별 \ 기간		1일	1박 2일	2박 3일	비 고 (1일 추가시 적용요금)
강 당	신 관	100,000	200,000	300,000	100,000
	구 관	80,000	100,000	150,000	50,000
생활관 (1실기준)	신 관		10,000	20,000	10,000
	구 관		8,000	10,000	2,000
강 의 실		35,000	70,000	105,000	35,000
가족교육관 (1동 기준)		30,000	60,000	120,000	60,000
운동장 등 부대시설 (시설별)		30,000	60,000	90,000	30,000

- 1. 강당, 강의실 및 생활관의 냉·난방비는 별도 실비로 징수함.
- 2. 1일 사용시간은 근무시간대로 하며 숙박시 퇴실시간은 12:00로 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연수생의 비용부담 면제) ① (생략) ②연수생에 대한 교재대, 식비, 강 사료 등의 연수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원에서 부담한다.	제5조(연수생의 비용부담 면제) ①(현행과 같음) ②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연수생----- -----.	연수생 정의를 명확히 함
제7조(시설사용료) ①(생략) (<u>신설</u>) ②연수원장이 공익 또는 공공목적 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시 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 면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는 납 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설을 사 용하기 전에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다.	시설사용료를 종합교육관 신축 및 물가변동 등 에 따라 조정

【예산안 : 4건】

- 2006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0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05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세입 예산 : 3,437,589,000천 원

○ 일반회계 : 2,771,000,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특별회계 : 666,589,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세출 예산 : 3,437,589,000천 원

○ 일반회계 : 2,771,000,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있음(내역 : 별첨)

○ 특별회계 : 666,589,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2006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수정조서

【증액조서】

(단위:천원)

구분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증 액	비고
			총 계	4,400,000	
			계	1,082,000	
		의회사무처	2건	50,000	
	33		의정활동인터넷생방송위탁운영	35,000	
			도정질문·답변집 발간	15,000	신규
		자치행정국	1건	50,000	
			독도연구소 운영비	50,000	신규
		보건복지여성국	5건	186,000	
	310		전국장애인참가종목육성지원	36,000	
			보건기관근무자 해외연수	54,000	신규
			정신보건심판위원해외연수지원	10,000	신규
			외국인주부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36,000	신규
			시각장애복지대학운영지원	50,000	신규
		환경산림수산국	2건	216,000	
	440		바다숲조성사업	200,000	
			산지유망식물재배기술용역	16,000	신규
		문화체육관광국	2건	30,000	
	971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10,000	
			문화원사무국장국내외연찬회경비	20,000	신규
		농정국	2건	550,000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250,000	신규
			비닐하우스폭설피해방지용지주대설치	300,000	신규
	94		예비비	3,318,000	

【감액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순감액	비 고
		총 계	△ 4,400,000	
	기획관리실	2건	△ 155,000	
69		대구경북연구원운영비	△ 100,000	
89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운영비지원	△ 55,000	
	자치행정국	6건	△ 1,143,000	
190		문화탐방및체험교실운영	△ 10,000	
213		도민의날행사참가지원	△ 23,000	
213		도민의날행사	△ 50,000	
219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 30,000	
220		소규모주민편익사업	△ 1,000,000	
246		후생관보수	△ 30,000	
	보건복지여성국	3건	△ 1,136,000	
290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지원	△ 1,000,000	
297		지역거점공공병원기능강화	△ 100,000	
340		도청어린이집운영	△ 36,000	
	환경산림수산국	2건	△ 216,000	
405		지역환경기술센타지원	△ 200,000	
479		산사태피해예방조사연구용역	△ 16,000	
	보건환경연구원	1건	△ 1,300,000	
582		보건환경연구원청사이전	△ 1,300,000	
	경제통상실	3건	△ 200,000	
91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비지원	△ 50,000	
925		동북아자치단체연합경제통상네트워크구축	△ 50,000	
935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건립	△ 100,000	
	문화체육관광국	1건	△ 250,000	
981		EXPO행사장내부지매입	△ 250,000	

【부기조정】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 기)	예산액	비고
		계	100,000	
	건설도시재난국	1건	100,000	
1054		경주강동위덕대~강동간도로개설 5억원중 1억원 삭감하여 안강양월 5리 시장도로 개설 1억원 증액	100,000	

200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세입 예산 : 2,101,936,000천 원

○ 특별회계 : 2,101,936,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세출 예산 : 2,101,936,000천 원

○ 특별회계 : 2,101,936,000천 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2005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세입예산 : 3,440,653,000천원

○ 일반회계 : 2,793,898,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있음(내역 : 별첨)

○ 특별회계 : 646,755,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 세출예산 : 3,440,653,000천원

○ 일반회계 : 2,793,898,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있음(내역 : 별첨)

○ 특별회계 : 646,755,000천원

⇒ 수정내역 : 수정없음

200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조서

【세입 : 증액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기)	증 액	비고
		계(1건)	200,000	
34	기획관리실	혁신선도 자치단체 컨설팅 용역비	200,000	

【세출 : 삭감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기)	증 액	비고
		계(2건)	900,000	
134	보건복지여성국	지방공사안동의료원기능보강사업	800,000	
346	건설도시재난국	성주신계~동원간 도로확포장	100,000	

【세출 : 증액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기)	증 액	비고
		계(4건)	1,100,000	
41	기획관리실	혁신선도 자치단체 컨설팅 용역비	200,000	
136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전문간호센터(너어싱홈)신축	800,000	
	건설도시재난국	2건	100,000	
		수륜 남은 1리 도로확포장	50,000	신규
		초전 문덕 1리 도로확포장	50,000	신규

【명시이월 사업 : 증액조서】

(단위: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 (부기)	증 액	비고
		계(2건)	2,200,000	
49	기획관리실	혁신선도 자치단체 컨설팅 용역	200,000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전문간호센터(너어싱홈)신축	2,000,000	신규

200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세입예산 : 2,158,535,000천원

○ 수정없음

☐ 세출예산 : 2,158,535,000천원

○ 수정없음

【동의안 : 18건】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방채 발행안
- 2006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2006년도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일자 : 2005. 11. .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 안 사 유

- 총무과 소관 : 종합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
- 보건위생과 소관 : 노인간호 및 재활치료 제공을 위한 노인전문
간호센터 건물 신축
-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소관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친환경 생태체험 학습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물고기 환경·생태체험관 건립
- 테마파크조성사업단 소관 : 왕경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수변테마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 매입
- 소방본부 소관
소방력보강을 위한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신설 부지매입과 청사 신축

2. 근 거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3. 주 요 골 자

- 재산의 취득
 - 토 지 : 4건 (36,173m²)
 - 건 물 : 6건 (10,190.8m²)

4. 재산의 취득내용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건 명	면 적	추정액	용도 및 필요성
계	합 계 토 지 건 물	46,363.8 36,173 10,190.8	17,257 1,407 15,850	
취득	종합연수원건립부지매입	27,281	450	종합연수원 신축부지 확보
	노인전문간호센터건립	1,388	1,552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민물고기 환경·생태 체험관 건립	3,844	7,398	복합형 환경·생태체험관 건립
	수변테마공원 부지 매입	6,988	500	수변테마공원 조성
	고령소방서 신축	2,975.2	4,500	소방력 보강
	칠곡소방서 가산파출소 신축	661.2	800	소방력 보강
	경산소방서 자인파출소 신축	661.2	800	소방력 보강
	경산소방서 풍각파출소 신축	661.2	800	소방력 보강
	칠곡소방서 가산파출소 부지매입	1,157	157	소방력 보강
	경산소방서 자인파출소 부지매입	747	300	소방력 보강
처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5.<생략>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

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 제곱미터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6. 부 록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illegible]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총계			46,363.8	17,257			
1	취득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160-1	27,281	450	2006	종합연수원 신축부지 확보	부지매입비 확 보 450백만원
2	"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7번지외2	1,388	1,552	2006	노인전문 간호센터 건립	신 축
3	"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240-7	3,844	7,398	2006	민물고기 환경·생태 체험관 건립	신 축
4	"	경주시 천군동 108	6,988	500	2006	수변테마공원 조성	매 입
5	"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170	2,975.2	4,500	2007	고령소방서 신축	신 축
6	"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337-2	661.2	800	2006	칠곡소방서 가산파출소 신축	신 축
7	"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192-3외1	661.2	800	2006	경산소방서 자인파출소 신축	신 축
8	"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01-10	661.2	800	2006	경산소방서 풍각파출소 신축	신 축
9	"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337-2	1,157	157	2006	칠곡소방서 가산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매 입
10	"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192-3외1	747	300	2006	경산소방서 자인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매 입

2006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방채 발행안

I. 제출근거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2006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을 제출합니다.

II. 지방채 발행 사유

2006년도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요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III. 지방채 발행안 : 붙임

2006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방채 발행안

I.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2006년도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요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II.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III. 지방채 발행 계획

- 사 업 명 : 2006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 발행계획 : 7,544백만원
- 차 입 선 : 금융기관채 증서차입
- 차입조건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 6.67%, 변동금리)
- 상환부담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금 및 이자 지원
- 차입시기 : 2006년도
 -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입시기 적의조정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채 발행 승인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명예퇴직수당 기채승인요청액	교육부 원리금 부담 기채승인액	비 고
경북교육청	7,544,000	7,544,000	

※ 2006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단위 : 천원)

과 목	2006년도 명예퇴직 예 정 인 원(명)	단 가	소 요 액	비 고
초등교사	35	96,000	3,360,000	
중등교사	52	70,846	3,684,000	
일 반 직	10	50,000	500,000	
합 계	97명		7,544,000	

【결의안 : 1건】

-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안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철회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65
----------	-----

제안년월일 : 2005년 11월 21일
제안자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난 11월 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와 열린우리당 당정 간담회에서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하고 정부에서는 관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수도권내 공장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지방투자 위축과 수도권으로 역이주를 초래하여 지방은 황폐화, 공동화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가중되어 지역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여 중앙정부의 조치를 저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경상북도 의회의 통일된 뜻을 건의하여 전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할 뿐 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방지를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 포기로 수도권만 성장하고 지방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임.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중단은 물론, 지방의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됨으로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명약관화한 정책으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철회,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함.

3. 건의내용 : 별첨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철회촉구 결의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1월 4일 「수도권 발전대책 고위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하였다.

이는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와 균형발전에도 역행될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수도권의 과밀화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해오던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을 키우고 지방을 말살시키기 위한 새로운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합 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길로 가기 위한 속임수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지방이전을 준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중단은 물론, 지방에 이전한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도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에 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역경제 말살정책인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침체되어 가는 지방경제가 희생 될 수 있도록 국내 대기업을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와 여당은 지방경제를 말살시키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2.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참여정부는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라.
3.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 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2005. 11. .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기타안 : 1건】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총괄)

1. 감사기간 : 2005.11.22 ~ 12. 1(10일간)
2. 대상기관 : 71개 기관 및 부서(경북도 50, 경북도교육청 21) ※ 현지확인 4개소
3. 감사결과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계	시정처리 요구	건의·촉구사항
합 계		214	92	122
의회운영 위원회	의회사무처	8	2	6
기획과학 위원회	소 계	29	11	18
	공보관실	1		1
	감사관실	1		1
	기획관리실	5	2	3
	과학정보산업국	8	4	4
	공무원교육원	2		2
	지방의료원(3)	9	5	4
	경북개발공사	3		3
행정사회 위원회	소 계	19	9	10
	자치행정국	7	3	4
	보건복지여성국	9	5	4
	경도대학	2		2
	자연환경연수원	1	1	
교육환경 위원회	소 계	25	13	12
	환경산림수산국	9	5	4
	보건환경연구원	2		2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종합개발사업소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계	시정처리 요구	건의·촉구사항
교육환경 위 원 회	수산자원개발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			
	도교육청(10)	10	6	4
	시·군교육청(23)	4	2	2
농 정 위 원 회	소 계	22	10	12
	농정국	11	6	5
	농업기술원	11	4	7
경 제문 화 위 원 회	소 계	82	36	46
	경제통상실	30	12	18
	문화체육관광국	29	12	17
	문화엑스포	8	6	2
	경북통상(주)	3	1	2
	경상북도우수연수원	6	3	3
	경상북도체육회	1		1
	한국국학진흥원	5	2	3
건 설소 방 위 원 회	소 계	29	11	18
	건설도시재난국	10	4	6
	종합건설사업소	5	2	3
	소방본부및소방서	14	5	9

의정활동보고서(제203회 정례회)

2006. 1 인쇄 / 2006. 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